

행정자치부

110-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/ ☎ 3703-4622~3/ FAX 3703-5529/ 담당 김상돈

문서번호 : 조기 12210-36

시행일자 : 1998. 4. 4.

(제 1 안)

받는곳 : 내부결재

참조 :

취급		장관	국무총리
보존		기정길	김상돈
차관	이정희	기획관리실장	김성우
국장	최세중	조직관리과장	김경숙
과장	김숙현	행정제도과장	김경숙
기안	윤동인	행정제도과장	김경숙
			협조

제 목 :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·시행(국무총리 지시 제 1998-7 호)

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 관한통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임과 같이 '98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·시행코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'98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. 끝.

(제 2 안)

받는곳 : 받는곳 참조

제 목 : '98 정부조직관리지침 통보

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 관한통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'98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'98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. 끝.

받는곳 : 가(-03~04), 나, 다, 라

(제 3 안)

받는곳 : 받는곳 참조

제 목 : '98 정부조직관리지침 통보

'98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'98 정부조직관리지침 1부. 끝.

받는곳 : 가(03~04), 국회사무처, 법원행정처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헌법재판소

국무총리

5/1 총무과

실장	재가문서 요약전	
조정관		
국무조정실		

제목 : '98 정부조직관리지침 시달

정부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

-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
- 정부조직 및 인력의 감량화
- 정부조직에 기업형 책임경영행정기관제도 도입

정부조직 운영체계의 획기적 개선

- 조직관리의 효율성·탄력성 강화
- 정부조직진단 및 정원감사를 통한 인력운영의 적정성 확보
- 위원회 및 산하단체의 효율적 관리

행정권한의 민간·지방이양 확대

- 민간·지방이양 대상사무의 적극 발굴 및 추진
- 이양사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

『'98年度 政府組織管理指針』要旨

< 기본방침 >

- 정부조직에 시장경쟁 원리의 도입 등으로 정부부문의 경쟁력 강화
- 조직관리의 자율성·책임성 강화 등 정부조직 운영체계의 획기적 개선 도모
-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및 민간이양 확대로 행정의 현지성과 공공서비스의 생산성 제고

< 주요시책 >

□ 政府 構造調整의 지속적 추진

- 정부조직개편 後續措置의 철저한 이행
 - 금년도 감축계획 및 초과현원 해소 등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
 - '99년 및 2000년에 예정된 조직개편계획의 사전준비 철저
 - 교육·경찰·공안공무원에 대한 자체 구조조정계획 수립·추진
- 정부조직 및 인력의 減量化
 - 『公務員 總定員制』를 도입, 정원증가를 원천적으로 억제
 - 정부기능의 민간·지방이양을 통한 감량경영 추진
- 정부조직에 기업형 『責任經營行政機關制度』 도입 추진
 - 의료 등 사업적 성격의 기관을 市場原理에 따라 운영

'98年度 政府組織管理指針

'98. 4

行政自治部

順序

- 1 政府革新의 目標 및 戰略
- 2 '98年度 政府組織 管理方針
- 3 主要施策
 - I. 정부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
 - II. 정부조직 운영체계의 획기적 개선
 - III.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확대
 - IV. 행정권한의 위임 및 민간위탁·이양 추진
- 4 行政事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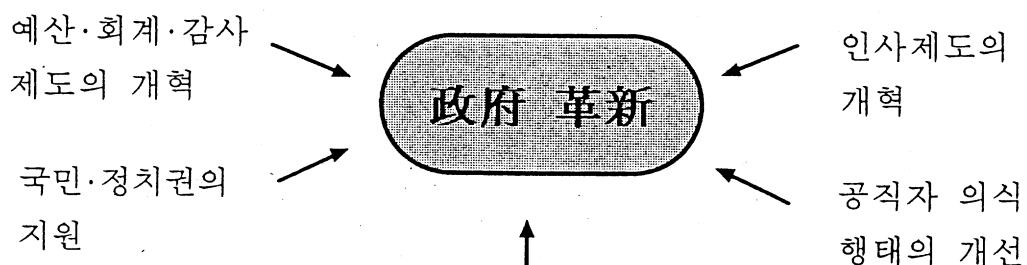
政府革新의 目標 및 戰略

< 目 標 >

『民主的이고 競爭力있는 서비스政府』具現

< 戰 略 >

↑



政府組織의 構造 調整

정부기능 조정
(규제개혁·민영화
지방이양)

중앙부처
재 편

정부인력
감량화

'98年度 政府組織 管理方針

□ 정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.

- 정부내 고비용·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조직에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정부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.

□ 정부조직의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.

- 성과중심의 행정체제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.

□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확대 추진한다.

- 주민편의를 최우선하는 수요자 중심의 기능배분으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자치행정 실현을 도모한다.

□ 행정권한의 위임 및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한다.

- 행정의 현지성과 공공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정부 기능의 하부위임 및 민간이양을 확대한다.

主 要 施 策

I. 政府 構造調整의 持續的 推進

1. 政府組織改編 後續措置의 철저한 履行

- (1) 각 부처는 '98.2.28 직제개정으로 확정·시행된 금년도 조직 개편 및 인력감축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며, 초과현원 해소 등 조직의 안정화에 적극 노력한다.
- (2) 각 부처는 『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』 ('98.1.26)의 '99년도 및 2000년도 조직개편 계획(지방·민간이양, 공사화 등)의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.
- (3) 교육부장관, 법무부장관, 경찰청장 등은 금년중에 교육·공안·경찰분야의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수립·추진한다.
- (4) 관계부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개정('98.2)으로 개편된 통상, 경제정책의 조정, 예산, 행정개혁 등의 기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한다.

2. 政府組織 및 人力의 減量化

- (1) 행정자치부장관은 금년중에 『공무원총정원제도』를 도입하여 정원 증가를 원천적으로 억제하고, 새로운 인력수요는 기관간 정원조정을 통하여 대처하도록 조치한다.
- (2) 각 부처는 국가 경제위기의 극복 등 조직보강이 불가피한 경우, 분야별 중장기 조직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자체 조직과 인력 범위내에서 최대한 상계 활용한다.
- (3)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부처에 대하여 단순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구·인력의 확대는 억제하고, 법령 제·개정 등 신규 수요분야는 기존조직을 상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.
- (4)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부처는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을 통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감축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.
- (5)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부처는 지방이양 및 민간위탁 등을 통한 자율감축을 확대 추진하고, 정원 감축을 시행함에 있어 기관간·직급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노력한다.
- (6) 행정자치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기구·인력의 감축 및 신규수요분야 재배치, 민간위탁 등 감량 경영을 추진한다.

3. '99年度 所要定員의 策定

(1) 행정자치부장관과 각 부처는 분야별 정원관리기준에 따라 '99년도 소요정원의 규모를 책정하되, 최대한 자체 정원을 상계활용 한다.

※ 분야별 정원 관리기준

- 교원에 대한 신규수요는 소규모학교 통·폐합 등으로 대처
- 경찰·공안분야는 본부 및 지방청 등 중간감독기관 감량화와 파출소 광역화 등을 통해 신규수요에 대처
- 우정·철도 등 협업분야는 경영합리화계획에 의거 감량화
- 중앙부처 일반분야는 기존 정원을 최대한 상계활용

4. 政府組織에 企業經營方式의 導入

- (1) 행정자치부장관은 기획예산위원회와 협의하여 금년중 사업적 성격의 정부기관에 대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는『책임 경영행정기관제도』의 도입을 추진한다.
- (2) 각 부처는 책임경영행정기관으로 전환가능한 대상기관을 적극 발굴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조하여 세부시행방안을 수립한다.

※ 대상기관 예시

- 여권발급, 운전면허 등 외부고객을 주대상으로 하는 기관
- 교육훈련기관 등 재정수입원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
- 의료 등 사업적 성격의 기관

II. 政府組織 運營體系의 획기적 改善

1. 組織管理의 自律性 · 彈力性 強化

- (1) 각 부처는 업무의 성격과 기관실정에 따라 『팀』 · 『단』 등 조직형태를 적극 활용하여 조직의 탄력성을 강화한다.
- (2) 각 부처는 총리령(또는 부령)에 위임된 과단위이하 하부 기구의 자율개편권과 직급별 정원범위내 기관간 정원의 배정 및 이체제도를 적극 활용한다.
- (3) 각 부처는 중간관리계층의 복수직급 정원에 대하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, 주요정책기능을 수행하는 직위에 우선 배정하는 등 운영을 내실화한다.

2. 政府 組織診斷의 內實化

- (1)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조직에 대한 진단방식을 과학화·내실화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합동진단을 실시한다.
 - 일선행정기관의 광역화 · 통합방안과 민간 · 지방이양 대상 기능의 발굴, 『총정원제도』 및 『책임경영행정기관』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.
- (2) 각 부처는 소속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자율감축 분야의 발굴 및 기관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적극 강구한다.

3. 公務員 定員監査의 強化

- (1) 행정자치부장관은 직제통칙 제28조에 의거 각 부처 조직 관리의 자율성 강화에 따른 정원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감사를 실시한다.
 - 정원운영의 조직관계법령 및 지침에의 적합성
 - 총리령(또는 부령)에 위임된 기관간 또는 직급간 정원배정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·지도한다.
- (2) 행정자치부장관은 정원감사 결과 부당한 정원 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통보하고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.

4. 委員會 新設抑制 및 運營의 活性化

- (1) 각 부처는 '97년도 제9차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중 법령조치되지 않은 위원회를 조속히 정비한다.
※ 제9차 정비대상중 미조치 위원회현황 : 붙임 1 참조
- (2) 각 부처는 직제통칙 제20조에 의거 불요불급한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한다.
- (3) 각 부처는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한편, 여성·장애인 비율을 높이고 위원(장)의 직급은 고위직화를 지양한다.

5. 政府傘下團體의 效率的 管理

- (1) 각 부처는 『정부산하단체 조직관리강화에 관한 훈령』 ('92 국무총리훈령 제259호)에 따라 정부산하단체에 대하여 정부 조직관리에 준하여 기구증설이나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, 산하단체의 신설시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기관 및 기존 산하단체와 기능상 중복되거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- (2)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산하단체 신설협의시, 설립의 필요성과 기능상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직과 인력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한다.

6. 政府組織 및 人力運營의 適正性 確保

- (1)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2차이하 소속기관중 국민부담적, 공권력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하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현재의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.
- (2) 각 부처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 배정된 복수직급 정원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.

III. 中央政府 機能의 地方移讓 擴大

1. 地方移讓 對象事務의 積極 發掘 및 推進

(1)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하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대폭 발굴하여 이관한다.

가. 지역경제, 주민복지 등 지역차원의 계획수립과 집행이 요구 되는 사무는 대폭 지방으로 이양한다.

나. 사업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부분 이양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사무 전체를 이양 한다.

- 이양의 범위를 인구, 면적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사무
- 중앙은 인·허가, 지방은 지도·감독권을 행사하는 사무 등

다.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되고 있는 기관위임사무를 우선적으로 이양하고, 특별지방관서와 자치단체와의 유사·중복 된 기능은 가능한 한 자치단체로 일원화한다.

라.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함이 바람직하나, 직접 이양하기가 곤란한 사무는 우선 위임한 후 점진적으로 이양한다.

(2)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이관희망사무는 현재 진행중인 「행정 계층간 사무재배분」의 일환으로 제출한 사무를 이관검토 대상으로 한다.

(3) 시·도교육청은 자체적인 권한과 책임하에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제출한다.

- (4)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기능의 재조정 차원에서 조직관리와 연계하여 지방위임 또는 이양대상 사무를 적극 발굴하고, 그 결과를 직제에 반영하도록 한다.

2. 地方移讓 擴大基盤의 마련 및 事後管理 徹底

- (1)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이양 사업이 보다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「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법(가칭)」을 제정한다.
- (2) 행정자치부장관은 「지방이양합동심의회」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, 쟁점사안에 대한 효율적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그 기능을 활성화한다.
- (3) 각 부처는 이양확정사무(별책1 「이양사무목록」참조)를 조속히 이양토록 하고 이양시 이양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며, 법제처장은 법령심사시 이양확정사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.
- (4)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에 업무편람, 법령해설·판례집, 조례준칙 등의 제공과 실무교육 실시 등 지원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한다.
- (5) 행정자치부장관은 '95년이후 3년간 지방이양된 사무에 대한 각 부처의 지원실태를 점검하여,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해당부처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한다.
- (6) 지방자치단체는 이관된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 등 업무내용을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.

IV. 行政權限의 委任 및 民間委託・移讓 推進

1. 對象事務의 發掘・推進

- (1) 각 부처는 소관사무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民間에 위탁·이양할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·추진한다.
 - 허가·인가·등록 등 민원사무, 구체적인 정책 집행사무, 일상 반복적인 사무 등을 소속기관으로 위임
 - 협업기능, 연구·조사·검사 기능, 공공시설의 관리·운영 기능 등은民間으로 위탁 또는 이양
- (2) 각 부처는 기능이관에 앞서 이관대상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, 수용태세 등을 정밀분석한 후 행하도록 한다.
- (3) 각 부처는 단위사무 보다는 포괄적인 기능 중심으로 이관을 추진하여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, 특히 소속기관 위임시 일정규모나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위임의 범위를 정하는 사례를 가급적 지양한다.
- (4) 각 부처는 민간위탁·이양시 동일한 기능을 가급적 2개 이상의 기관에 위탁·이양함으로써 기관간 상호경쟁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유도한다.
- (5)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직관리와 연계하여 민간위탁·이양 대상기능을 발굴하고 직제개정시 이를 반영한다.

2. 事後管理의 強化

- (1) 각 부처는 이관된 사무에 대하여 불필요한 사전승인·보고·협의 등 사실상의 사전통제를 지양한다.
- (2) 각 부처는 이관된 사무처리기관에 대하여 각종 정보 및 기술의 제공·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, 특히 민간단체·협회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, 세제혜택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.
- (3) 각 부처는 개별법령 제·개정시 위임·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으로 위임·위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.
- (4) 각 부처는 이관된 사무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 지도·점검을 철저히 한다.

④ 行政事項

1. '99년도 소요정원 제출

(1)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본 지침 5쪽을 참조하여 '99 소요정원(안)을 '98. 5. 15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함.

2. 위원회 정비

- (1) 제9차('97~'98)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중 아직 조치되지 아니한 [붙임1]의 위원회에 대하여 각 부처는 '98. 6. 30까지 정비토록 하되,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최초 법률개정시에 반드시 조치하기 바람.
- (2) 다만, '98. 6. 30까지 조치되지 아니하는 위원회 또는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서 최초 법률개정시에 조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미조치사유 또는 조치불가사유를 [붙임2]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, '98. 5. 31까지 행정자치부(조직정책과)에 제출하기 바람.

3.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관

중앙부처

- (1) 이양대상사무 발굴시는 기 배포된 「중앙·지방사무총람」과 소관법령, 직제규칙 등을 참조하고 별도 송부하는 「지방이양사무목록」상의 「추진중사무」와 중복발굴되지 않도록 함.

- (2) 각 부처는 발굴된 사무를 「이관대상사무 현황(총괄)」 [붙임3] 및 「이관대상사무 조사표」 [붙임 4]의 서식에 의해 작성, '98. 5. 31까지 행정자치부(행정제도과)로 제출하기 바람.
- (3) 「지방이양 사무목록」상의 '추진중 사무'와 관련된 재정 경제부 등 13개 부·처·청은 「지방이양확정사무 추진현황」을 [붙임 5]의 서식에 의해 작성,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행정자치부(행정제도과)로 제출하기 바람.
* 상기사항 제출시 「A4, 아래아한글」 방식의 디스켓 함께 제출
- (4) 해당부처는 정부조직개편 작업시에 확정된 [붙임 6]의 「지방이양·위임 추진대상기능」에 대한 후속조치계획을 [붙임 7]의 서식에 의해 작성, '98. 5. 31까지 행정자치부(행정제도과)로 제출하기 바람.
- (5) 각 부처는 지방위임 사무현황을 [붙임 8]의 서식에 의해 '98. 5. 31까지 행정자치부(행정제도과)로 제출하기 바람.

지방자치단체

- (1) 각 시·도 및 시·도교육청은 자치단체별로 지정된 중앙부처 소관 이양사무 [붙임 9 : '95~'97 사무이양 현황]에 대하여 「지방이양 실태조사표」 [붙임 10]를 「'95~'97 이양사무 목록(별책 2)」을 참조하여 작성, '98. 5. 31까지 행정자치부(행정제도과)로 제출하기 바람.

- (2) 시·도교육청은 「이관대상사무 조사표」를 [붙임 11]의 서식에 의해 작성, '98. 5. 31까지 행정자치부(행정제도과)로 제출하기 바람.

※ 참고자료 (중앙·지방 공통)

- (1) 사무구분 판단기준 : [붙임 12]
(2) 지방이양 사무목록 : [별책 1]
(3) '95~'97 이양사무 목록 : [별책 2]

4.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및 이양

- (1) 각 부처는 '97년도 소속기관 위임 및 민간위탁(타기관 위탁 포함)·이양 추진실적(「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」개정에 의한 소속기관 위임 및 민간위탁·이양사무 포함)을 [붙임 13]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, '98. 5. 31까지 행정자치부(행정제도과)에 제출하기 바람.
- (2) 각 부처는 「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」에서 확정한 [붙임 14]의 “연도별 민간위탁 및 이양 추진사무”에 대한 법령조치 등 시행계획을 [붙임 15]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, '98. 5. 31까지 행정자치부(행정제도과)에 제출하기 바람.
- (2) 각 부처는 '98년중에 조치예정인 소속기관 위임 및 민간 위탁(타기관 위탁 포함)·이양 대상사무와 그 조치계획([붙임 14]의 “연도별 민간위탁 및 이양 추진사무”는 별도)을 [붙임 16]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, '98. 5. 31까지 행정 자치부(행정제도과)에 제출하기 바람.

【불 임 1】

제9차('97) 정비대상위원회중 미조치 위원회

부처명	위 원 회 명	정비내역	근거	정 비 사 유
계	45개(폐지 39개, 직급조정 6개) * 법률 28개, 대통령령 17개			
재경부 (3 개)	기술개발금융정책심의회	폐 지	법률	운영실적 미흡(8차정비대상)
	관세심의위원회	직급조정	법률	위원장 직급조정(차관→1급)
	재정자금운용심의회	직급조정	법률	위원장 직급조정(차관→1급)
조달청 (1 개)	계약심의위원회	폐 지	대령	조달시장개방등 여건변화로 필요성 상실(8차정비대상)
행정 자치부 (5 개)	사무자동화추진위원회	폐 지	대령	행정정보화추진위로 통합·운영
	공무원교육훈련심의회	폐 지	대령	운영실적 미흡(8차정비대상)
	상훈심의회	폐 지	법률	운영실적 미흡(8차정비대상)
	정부공문서평가심의회	폐 지	대령	운영실적 미흡
	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	폐 지	대령	지방자치법상 분쟁조정기구 설치시 동기구 활용
과학 기술부 (2 개)	종합과학기술심의회	폐 지	법률	폐지후 2002년 설치 재검토
	원자력위원회	직급조정	법률	위원장 직급조정(부총리→장관)
문화 관광부 (4 개)	정기간행물조정위원회	폐 지	대령	발행기관별 자율체제로 전환(8차정비대상)
	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	폐 지	법률	운영실적 미흡
	문화예술진흥위원회	폐 지	법률	운영실적 미흡
	청소년육성위원회	직급조정	법률	위원장 직급조정(총리→장관)
법무부 (1 개)	공증업무심의위원회	폐 지	대령	운영실적 미흡
국방부 (1 개)	국방·군사시설사업자문위원회	폐 지	대령	미구성

부처명	위 원 회 명	정비내역	근거	정 비 사 유
교육부 (1 개)	사회교육정책조정위원회	폐 지	법률	미구성
농림부 (5 개)	국가방조제심의회	폐 지	법률	운영실적 미흡
	수입자유화보완대책심의회	폐 지	법률	운영실적 미흡(8차정비대상)
	농수산물가격심의위원회	폐 지	법률	운영실적 미흡(8차정비대상)
	농수산물수출진흥심의회	폐 지	법률	민간주도의 협의체로 대체 (8차정비대상)
	농업정책심의회	직급조정	법률	위원장 직급조정(총리→장관)
산림청 (1 개)	중앙화전정리심의위원회	폐 지	법률	운영실적 미흡(8차정비대상)
산 업 자원부 (5 개)	광산보안위원회	폐 지	법률	광업조정위원회로 통합 (8차정비대상)
	해외자원개발심의회	폐 지	대령	운영실적 미흡
	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	폐 지	법률	운영실적 미흡(8차정비대상)
	광업개발심의회	폐 지	법률	광업조정위원회로 통합 (8차정비대상)
	수출품품질향상심의회	폐 지	대령	운영실적 미흡
특허청 (1 개)	부정경쟁심의위원회	폐 지	법률	운영실적 미흡
보 건 복지부 (5 개)	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	폐 지	대령	운영실적 미흡(8차정비대상)
	중앙보자복지위원회	폐 지	법률	운영실적 미흡
	가정의례심의위원회	폐 지	법률	운영실적 미흡
	사회복지사업기금관리위원회	폐 지	대령	근거법령 폐지예정
	모자보건심의위원회	폐 지	법률	운영실적 미흡
환경부 (1 개)	호소수질보전대책위원회	폐 지	법률	운영실적 미흡

부처명	위 원 회 명	정비내역	근거	정 비 사 유
건교부 (7 개)	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	폐 지	대령	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로 대체 (8차정비대상)
	건설기계형식심의위원회	폐 지	대령	운영 중단
	항공정책심의회	폐 지	대령	운영실적 미흡
	유료도로심의회	폐 지	법률	미구성(8차정비대상)
	도로정책심의회	폐 지	대령	운영실적 미흡
	평화의댐건설추진위원회	폐 지	대령	운영실적 미흡
	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	직급조정	법률	위원장 직급조정(총리→장관)
해 양 수산부 (2 개)	선원정책심의회	폐 지	법률	운영실적 미흡
	내수면개발위원회	폐 지	법률	운영실적 미흡(8차정비대상)

【붙 임 2】

미조치 또는 조치불가사유

부처명 :

위 원 회 명	정비내역	미조치 또는 조치불가사유	향후 조치계획

【불 임 3】

이관대상사무 현황(총괄)

(중앙부처 작성용)

기 관 명 :

이관 구분	소기능 및 사무명	근거법령	사 무 현 황		
			사무구분	처리권자	이관자치단체
①	②	③	④	⑤	⑥
위임	【예시】 1. 일반여행업(*11.2.4) 1) 일반여행업의 등록	관광진흥법 제4조	국가사무	장 관	시·군·구
이양	1. 국내여행업(*11.2.4) 1) 국내여행업의 등록	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	지방위임사무	시장·군수· 구청장	시·군·구
⑦ 계	위임	1			
	이양	1			
	환원				
	합계	2	국가 1 지방위임 1		

<작성요령>

- ① 발굴된 사무를(지방위임사무 포함) 자체 이관방침에 따라 「위임」 또는 「이양」으로 구분
- ② 위임 또는 이양하고자 하는 대상사무의 소기능명과 단위사무명을 기재(소기능 및 사무명은 「94 중앙·지방사무총람」을 우선 참고)
- ③ 단위사무별 근거법령 또는 관련근거를 기재
- ④ 국가사무, 지방위임사무 등으로 기재
- ⑤ 작성일 현재의 사무처리권자를 시·도지사 또는 장관, ○○(특별)지방청장 등으로 구분 기재
- ⑥ 위임 또는 이양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로 구분 기재
- ⑦ 위임 또는 이양하고자는 단위사무수의 합계를 기재

【붙임 4】

이관대상사무 조사표(예시)

(중앙부처 작성용)

1. 소관부처^① : 농림부

2. 이관구분^② : 시·군구 이양

3. 소기능명^③ : 사료의 품질관리(*8.4.2)

4. 대상사무명^④ : 배합 및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 등

○ 단위사무 내역

- 1) 배합 및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(시·도 위임)
- 2)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수리(시·도 위임)
- 3) 사료제조업 양도·임대·휴폐업·재개신고수리(시·도 위임)

5. 대상사무^⑤

○ 배합 및 보조사료제조업 등록(사료관리법 제9조제1항, 동법시행령 제16조)

- 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를 제조·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4·5의 시설기준을 갖추어
- 시·도지사에게 제조업 등록신청을 하면 시·도지사는 시설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·등록증을 교부함.

○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수리(사료관리법 제9조제4항)

- 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제조업 등록을 한자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배합시설 분쇄시설 공장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
-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시·도지사는 검토후 일산능력이 변경되거나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제조업 등록증 재교부 처리

- 사료제조업 양도·임대·휴폐업·재개신고수리(사료관리업 제9조제5항·제6항)
 - 사료제조업을 양도·임대·휴폐업·재개·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신고
 - 시·도지사는 검토후 제조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

6. 소관부처 의견^⑥

- 배합 및 보조사료 제조업은 등록 등 관련업무는 현재 시·도 위임 처리되고 있는 사무로서
- 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집행적 성격의 사무로서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편의를 고려, 시·군·구로 이양

7. 이관 추진계획^⑦ : '99년 상반기

<작성요령> : 이관대상사무 조사표(중앙부처 작성용)

- ① 소관부처명을 기재, 단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을 경우 ()내에 기재
- ② 이관(이양·위임)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이관유형을 기재
- ③ '94년 배부한 「중앙·지방사무 총람」상의 사무기능을 기재하되, 기능 명칭이 없을 경우 코드번호 생략
- ④ 대상사무가 2개 이상일 경우 예시와 같이 기재하되, 단일사무의 경우 사무종류와 처리권자를 사무명칭아래 ()에 기재
- ⑤ 사무개요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되, 관련현황이 있을 경우 추가
- ⑥ 이관하고자 하는 배경·사유·효과 등을 요약 기재
- ⑦ 이관시기를 예상하여 기재

【붙임 5】

지방이양 확정사무 추진현황

(중앙부처 작성용)

□ 총괄

구분	이양확정 ('91~'97)	이양완료		추진중	비고
		전반기까지	금회		
단위사무수	①	②	③	④	
【예시】	55	35	15	5	

□ 완료사무 현황(금회)

기능및단위사무명 (관련법령조항)	이양사무 개요	이양후 처리권자	확정년도 (완료일자)	비고 (지원사항등)
⑤	⑥	⑦	⑧	⑨
【예시】				
1. 공무원연금제도운영 (*1-2-3) ①지방직공무원의 재해부 조금 지급여부 심사결정 (공무원연금법 제26조)	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재해부 조금 급여의 심사·지급 결정에 대 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·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함	연금취급기관 장	'97 ('98. 6. 30)	별도 지침 작성 제공 및 교육 실시 *'99.1.1 시행

□ 추진중사무 현황

기능및단위사무명 (관련법령조항)	사무개요	현처리권자	이양 확정년도	추진계획
⑤	⑩	⑪	⑫	⑬
【예시】				
1. 지방공사 (*5-3-2) ① 지방공사 사장 임면 승인 (지방공기업법 제58조)	지방공사의 사장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면하되, 시·도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	행정자치부 장 관	'95	'99상반기 완료예정 자체경영체제 확립 후 장관승인권 폐지

<작성요령> : 지방이양 확정사무 추진현황(중앙부처 작성용)

1. 총괄

- ① '91년부터 '97년까지 지방이양하기로 확정한 사무총계를 별책으로 배부하는 「지방이양 사무목록」상의 통계를 확인하여 기재
- ② 이양확정사무중 전반기('97. 12이전)까지 이양완료(법령 개정 등)한 사무 수
- ③ 이양확정사무중 금회(상반기 '98.1~6월)에 이양완료한 사무 수
- ④ 이양확정사무중 작성일 현재(매반기말) 미이양되어 이양하여야 할 사무의 수

2. 완료사무 현황

- ⑤ 소기능명과 단위사무명을 예시와 같이 각각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재하고, 대-중-소 기능코드와 관련법령을 팔호안에 표기
- ⑥ 금회에 이양완료한 사무에 대하여 법령 개정후의 사무내용을 요약 기재
- ⑦ 이양완료후 처리권자를 「시·도지사」, 「시장·군수·구청장」 또는 기타 처리권자 등으로 기재
- ⑧ 이양확정년도와 이양완료일자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되, 완료일자는 개정법령 공포일이 됨.

※ 법령개정후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완료사무로 분류하고 시행예정일을 비고란에 별도로 표기.

3. 추진중사무 현황

- ⑤ 소기능명과 단위사무명을 기재하고 관련법령을 팔호안에 표기
- ⑨ 사무이양과 관련하여 예산, 인력, 지침 등 지원실적 있을 경우 기재
- ⑩ 법령상의 사무내용을 요약 기재
- ⑪ 작성일 현재의 사무처리권자를 시장·군수·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장관, 특별지방행정기관장 등으로 구분 기재
- ⑫ 「지방이양합동심의회」에서 이양결정한 연도를 기재(「이양사무 목록」참조)
- ⑬ 작성일 현재의 추진현황을 「법제처 심의중」 「98하반기 완료예정」 등으로 표시하고 향후 추진계획 또는 미이양된 사유 등을 요약

【붙임 6】

지방이양·위임 추진대상기능

추진연도	부처명	대상기능	비고
1998	건설교통부	- 건설업 면허	지방위임
1999	문화관광부	-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- 칠백의총 관리	지방이양
2000	해양수산부	- 어촌지도 - 수산종묘배양장 운영 (12개소 중 7개소)	지방이양
	농업진흥청	- 주요농산물 종자의 생산·보급기능(쌀, 보리, 콩, 옥수수, 감자 등)	지방이양

【붙임 7】

지방이양·위임 추진대상기능 조치계획

(중앙부처 작성용)

대상기능명	근거법령	조치시기	위임·이양대상 자치단체	비고

<작성요령>

- ① “조치시기”란에는 관련법령 개정시기를 기재함.
- ② “위임·이양대상 자치단체”란에는 대상기능에 따라 “시·도” 또는 “시·군·구”로 구분 기재함.
- ③ 비고란에는 개정해야 할 해당법령을 기재하도록 하고, 관련법령 개정이 불필요할 경우에도 “해당없음”으로 기재함.

【불 임 8】

'97년도 지방위임 추진실적

○ 부 척 명 :

'98. 5. 1 현재

일련 번호	사무명 및 근거법령	사무개요	업무 유형	위임 연도	수임기관	비고

< 작성요령 >

- ① “일련번호”는 사무명별로 부여
- ② “사무명 및 근거법령”은 소관 개별법령,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의 위임사무와 근거법률·시행령 등을 기재
- ③ “사무개요”는 법령상의 사무내용을 최대한 요약 기재
- ④ “업무유형”은 “인·허가”, “등록”, “수리”, “하명”, “사실확인”, “지도·감독”, “관리”, “고시”, “기타” 등으로 구분 표기
- ⑤ “수임기관”은 “시·도”, “시·도지사”, “시·군·구”, “시·군·구청장”으로 구분 표기(기관위임과 단체위임 구분)

【붙임 9】

'95~'97 사무이양 현황

'97.12.31 현재

분야별	소관부처	완료사무	작성 대상		사무폐지 등	실태조사서 작성 시·도
			소기능	단위사무		
	계	319	90	274	45	
산업경제	건설교통부	95	24	74	21	부산, 경기
	산업자원부	13	4	7	6	서울, 충북
	농 림 부	36	6	28	8	충남, 전남
	산 림 청	50	13	50		강원, 충북
	해양수산부	14	4	13	1	경남, 제주
	소 계	208	51	172	36	
사회문화	보건복지부	10	4	9	1	대구, 제주
	교 육 부	17	5	15	2	충남· 인천교육청
	문화관광부	21	7	20	1	전남, 경남
	소 계	48	16	44	1	
생활환경	환경부	14	8	14		강원, 충남
지방관리	행정자치부	49	15	44	5	서울, 대구

【붙임 10】

지방이양사무 실태조사표

1. 소기능 및 대표사무명 :

- ※ 단위사무명 ①_____ (실시근거, 처리권자)
②_____ ("")
③_____ ("")

2. 중앙부처의 지원실태

구 분	지 침	준 칙	정 보	자료제공	설 문 유	인 력	예 산	기 타
지원실적								
추가지원 필요여부								

< 구체적 지원실적 >

-

< 추가지원 요구사항 >

-

3. 권한이양후 중앙부처 관여 여부

4. 이양사실을 통보받은 형식

< 작성요령 >

- ① 1.은 별첨 이양사무목록을 참고하여 작성(실시근거, 처리권자는 ()안에 기재하되, 이양받은후 상황을 의미)
- ② 2.의 경우는 중앙부처의 지원실적 유무, 자치단체 지원희망 여부에 대하여 O·X로 기재하되, '구체적 지원실적' '추가지원 요구사항'이 있는 경우 간략하게 기재(가능한 단위사무별이 아닌 소기능 중심으로 작성)
- ③ 3.은 사무이양후 훈령·예규·고시·지침 공문등에 의한 사후보고·사후승인, 사전협의·조정 등 불필요한 관여가 계속되는 사항을 기재
- ④ 4.는 공문·관보·전화 등 통보받은 형식 기재

【불 임 11】

이관대상사무 조사표(예시)

(시·도교육청 작성용)

1. 소관부처^① : 문화관광부

2. 이관구분^② : 지방이양

3. 소기능명^③ : 지방문화원 지도감독(*4.2.1)

4. 대상사무명^④ :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취소 등

○ 단위사무 내역

- 1)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취소(시·도 위임사무)
- 2)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부의 지도·감독(시·군·구 위임사무)
- 3) 지방문화원의 정관변경 인가(시·군·구 위임사무)
- 4) 지방문화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보고의 접수(시·군·구 위임사무)

○ 관련사무 현황

- 1) 지방문화원 설립인가(이양 확정)
- 2) 지방문화원 임원 취·해임 승인(이양 확정)

5. 사무개요^⑤

○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취소(지방문화원진흥법 제9조, 동법시행령 제11조)

- 시·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작위, 기타 부정한 방법, 설립목적외 사업을 한 때,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의 경우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.

* 인가취소 사유 : 동법 제9조 참조

- 처리절차

위반사유 발생 → 확인 지도점검 → 취소여부 결정 → 처분 통보
→ 의견진술(청문) → 의견서 제출 → 답변서 작성 → 취소

-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부의 지도·감독(동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11조)

- 시·군·구 청장은 자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, 보조금 집행실태·사무·인사관리, 이사회·총회 등 문화원 일반운영실태를 지도점검 (시·군·구 위임사무)
- 업무처리절차

지도감독계획 수립 → 지도점검 → 위반사항 조치 및 결과보고
(시·군·구) (시·군·구) (시·군·구 → 시·도 → 문체부)

- 지방문화원의 정관변경 허가(동법시행령 제3조)

- 시·도의 승인을 얻어 시·군·구를 경유처리토록 규정
- 업무처리절차

지방문화원 발의 → 총회 의결 → 시·군·구 경유 → 시·도지사
승인 → 시·군·구 경우 → 지방문화원 통보

- 지방문화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보고의 접수(동법시행령 제7조, 제11조)

- 문화체육부 및 시·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은 국고·시비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 문화체육부장관(시·도지사)에게 사업 실적 및 계획 보고
-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사업 종료시 1개월이내 사업정산 보고
- 업무처리절차

문화체육부, 시·도로부터 사업비 지원 → 시·군·구 지원 → 지방문화원 수령·집행 → 정산보고(시·군·구 경유) → 시·도지사 보고

6. 자치단체 의견^⑥

- 지방문화원은 주로 시·군·구 단위로 설립되고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문화 창달의 중추기관으로서 시·군·구의 문화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.
- 따라서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취소 등 이양대상 사무는 기이양확정된 “설립인가”, “임원 취·해임 승인” 건과 연계하여 처리됨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위해 보다 적절하다고 봄.
(* 문제점이 있는 경우 적절하게 제시)
- 구체적으로는 정관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, 문화원 운영의 지도감독이 용이한 시·군·구에서 이양처리함과 아울러, 현재 위임처리되고 있는 사업실적·계획 등 보고서를 자율적 책임하에 접수·검토·조정하도록 이양함이 자치정신에 부합된다고 봄.

7. 조치 필요사항^⑦

- 위임처리되고 있는 사무를 “시·군·구”로 이양하도록 관련법령(지침) 등을 개정

<작성요령> : 이관대상사무 조사표

- ① 기능재배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명을 기재
- ② “지방이양”, “지방위임”으로 구분 기재
- ③ ‘94년 배부한 「중앙·지방사무총람」상의 사무기능명을 참고하여 기재하되, 기능명칭이 없는 경우 코드번호 생략
- ④ 대상사무가 2개 이상으로서 관련사무가 있는 경우 예시와 같이 기재, 단일사무인 경우 대상사무명을 기재하고, 그 아래에 사무종류와 처리권자를 ()내에 표기
- ⑤ 대상사무와 관련된 법률, 시행령상의 내용 및 업무상황과 처리절차를 요약 기재
- ⑥ 이양·위임해야 하는 사유 및 견해 등을 요약 기재
- ⑦ 대상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위를 ‘○○법률 제○○조 및 동법시행령 제○○조 개정’ ‘조례준칙 제공’ ‘보조금을 지방교부금으로 전환’ 등으로 기재

【붙 임 12】

사무구분 판단기준

1. 전국적 통일성 대 지역성

- (1) 국가의 종합적 정책 또는 계획을 조정·수립하는 업무인가 ?(중앙)
지역의 개별적 이해관계 또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가 ?(중앙)
- (2) 사무처리기준의 통일적인 설정 및 적용이 필요한가 ?(중앙)
사무처리에 있어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?(지방)
- (3) 사무효력(사업의 결과 또는 파급효과)이 전국적인가 ?(중앙)
사무효력(사업의 결과 또는 파급효과)이 지역적인가 ?(지방)
- (4) 주민의 이해관계가 간접적인가 ? (중앙)
주민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인가 ? (지방)
- (5) 지역주민의 참여 또는 행정기관과의 빈번한 접촉의 필요성
(또는 장소적 근접성)이 적은가 ? (중앙)
지역주민의 참여 또는 행정기관과의 빈번한 접촉의 필요성
(또는 장소적 근접성)이 많은가 ? (지방)

2. 정책적 성격 대 집행적 성격

- (1) 일반적인 기준·요건·범위의 설정 등 정책수립 사무는 무엇인가 ?(중앙)
- (2) 지역특성을 감안하면서 지역차원의 계획수립과 집행이 가능한
사무인가 ?(지방)

3. 경제적 효율성

- (1) 광역적·대규모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경비절약·능률성 제고 등
이익이 있는가 ? (중앙)

- (2) 당해 자치단체외에 다른 자치단체에까지 외부효과가 미치는가 ? (중앙)
- (3) 자치단체간의 경쟁효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 ?(지방)
- (4) 지역적 실현의 필요성이 있는가 ? (지방)

4. 수용태세

- (1) 사무수행을 위한 예산·정보·기술수준 고려시 지방에 의한 업무수행이 곤란한가 ? (중앙)
- (2) 자치단체 스스로 또는 국가의 보완적 지원을 통하여 지방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인가 ? (지방)
- (3) 사무이양시 예산·인력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발생하는가 ? (중앙)
- (4) 사무이양시 발생하는 예산·인력을 무리없이 감당할 수 있는가 ? (지방)

5. 지역간 형평성 및 균형발전

- (1)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무인가 ?(중앙)
자치단체간 형평성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사무인가 ?(지방)
- (2) 제3자격 공정성이 필요한가 ?(중앙)
제3자격 공정성이 덜 필요한가 ?(지방)

【붙 임 13】

'97년도 소속기관 위임 및 민간위탁·이양 추진실적

부 첨 명 :

대상사무명	근거법령	위임·위탁 및 이양·근거법령	위임·위탁 및 이양 일자	수임·수탁 및 이양 대상기관	비 고

< 작성요령 >

- 비고란에는 소속기관위임, 타기관위탁, 민간위탁, 민간이양 등 구체적인 유형 기재

【불 임 14】

연도별 민간위탁 및 이양 추진사무

< 1998년도 >

부처명	대상기능	비고
과학기술부	· 대덕연구단지 관리	
산업자원부	· 수출자유지역 투자유치 홍보 · 광업권 설정 조사	
보건복지부	· 국립보건원의 국가고시 관리	
해양수산부	· 항로표지 제작 및 수리 (항로표지기지창 폐지) · 선박검사기능 · 해기사 시험관리 · 항만청소선 운영	
중소기업청	· 국립기술품질원의 계량기 검정 · KS 표시 인증	

< 1999년도 >

부처명	대상기능	비고
국방부	· 국군홍보관리소의 제작·집행업무	
행정자치부	· 청사조경관리 ·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입력	
교육부	· 국제교육진흥원의 국제교육교류사업중 교재개발·공급 및 외국인장학생 초청사업	
과학기술부	· 서울과학관 운영	
문화관광부	· 국립중앙극장 운영 · 정부간행물 및 영상 제작	
농림부	· 농산물 검사기능	
보건복지부	· 국립목포결핵병원 운영 ·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관리기능 · 사회복지연수원의 사회복지사 양성기능	
건설교통부	· 건설공사의 시험·조사기능 · 항공무선표지소 운영	
해양수산부	· 인천갑문관리소의 갑문수리·유치관리	
관세청	· 항만보세구역 감시기능 · 통신 및 감시장비 유지·보수	
산림청	· 국유림 관리 및 산림내 시설 운영	

【불 임 15】

연도별 민간위탁 및 이양 추진사무 조치계획

부처명 :

대상사무명	근거법령	조치시기	수탁 및 이양 대상기관	비고

<작성요령>

1. 조치시기란에는 관련법령 개정시기를 기재
2. 비고란에는 개정해야할 관련법령을 기재하도록 하고, 관련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“해당 없음”으로 기재

【붙임 16】

'98 소속기관 위임 및 민간위탁·이양사무와 조치계획

부처명 :

대상사무명	근거법령	수임·수탁 및 이양 대상기관	조치계획	비고

<작성요령>

1. 수임·수탁 및 이양대상기관란에는 ○○청, ○○사무소, ○○공사, ○○협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
2. 조치계획란에는 「'98. ○월중 법령 개정」, 「'98. ○월중 관계부처 협의후 조치」, 「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개정시 조치」 등 조치시기·조치방법 및 선결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
3. 비고란에는 소속기관위임, 타기관위탁, 민간위탁, 민간이양 등 구체적인 유형 기재